

서독의 강제이주민 통합에 관한 연구

박 명 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과정에서 영국, 미국과 소련의 점령국들은 독일의 국경을 확장하는 가운데 제3제국의 동부지역과 동부유럽, 동남부유럽지역의 독일인 집단거주지역 주민 1,800만 명을 연합군 점령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단행하였다. 서독의 경우, 패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기에 이를 강제이주민들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사회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이후 다양한 난민집단을 다루는 정책들과 함께 독일 사회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게 된다. 거주지이전프로그램, 전쟁부담조정법, 이산가족 찾기와 후기귀환민정책 등이 강제이주민들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통합을 꾀하면서 동시에 전후 서독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강제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찍부터 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찰시키기 위해 압력집단을 형성해 나갔다. 특히 강제이주된 중간계급 출신들은 이익집단의 활동을 통해 이전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강력히 진전시키게 된다. 결국 '통합'은 정부측의 시각에서는 사회적 '융화', 즉 강제이주민들이 서독의 지역사회구조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강제이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강제이주 이전에 누렸던 법적 권리, 재산소유 및 사회적 지위를 '복구'하는 과정을 의미했던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면서 서독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합주의적 방식에 의하여 조정해 나갔다.

I. 서 론

독일이 구동독체제를 흡수하여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체제간의 법적, 행정적 제도를 통합한 지 6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구동독지역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지원의 기간이 대부분 완료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편입된 연방 주들의 지역민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경제적 수준의 균등화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심리적 기대 및 만족도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서독에서는 외부에서 투입된 인구집단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정책들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발달되어 왔다. 패전으로 인한 강제이주민집단의 통합문제에서부터 분단 기간 동안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하거나 탈출한 난민집단의 통합,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강제이주민집단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법적 보장과 사회복지적 원조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 발전의 경험은 통일독일이 새로이 안게 된 동서지역 사회통합의 과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분단국가의 사회정책 발전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강제이주민집단을 통합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회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치독일을 봉괴시키면서 미국, 영국, 소련과 프랑스의 점령국들은 독일의 동부국경을 확정짓는 협정에 따라 1945년부터 1949년까지 4년 동안 제3제국의 동부지역과 동부 및 동남부유럽의 나치점령국가, 독일로부터 점령당하지는 않았으나 오래 전부터 동유럽국가들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독일인 거주지역으로부터 독일국적 소지자 및 게르만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켰다. 이들의 강제이주 후 10여 년이 지난 1957년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위의 조건을 갖추고 1957년 현재 서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약 9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당시 서독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대규모집단이었다.

이들 강제이주민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군 군정지역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을 하면서 전쟁 직후부터 서독정부가 성립된 이후까지 폐전으로 혼란한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제는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전후 주택과 일상용품의 부족으로 강제이주민과 서독지역민들 사이의 갈등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경제적 궁핍과 귀향욕구로 인해 강제이주민들은 조직화하여 사회적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인구집단의 통합문제는 연합군 군정당국과 정부수립 이후 서유럽의 자본주의적 발전구도 속에서 서독의 내부적 통합과 안정을 꾀해야 하는 아데나워정권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중의 하나였다.

독일의 '강제이주민(Vertriebene)'은 '난민(Flüchtlinge)'이라는 용어와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다. 난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일컬으며 이들은 강제이주민과 명백히 구분된다. 폐전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강제이주민 문제가 시기적으로 앞서 발생했고 보다 직접적인 점령군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주민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난민문제인 반면, 동독난민 문제는 폐전보다는 동서독 분단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탈출의 강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난민문제이다. 그러므로 강제이주민의 통합문제가 전후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 막 탄생한 서독정부의 힘에 겨운 시급한 과제였다면, 냉전시기에 이루어진 동독난민 문제는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었으며 전문성과 숙련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업집단이 대거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이 집단의 통합은 자리를 잡아가는 서독 정부가 경제성장의 주력부대와 정치적인 선전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였다.

학문적 분석개념으로나 정책적 용어로서나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통합’은 정부측의 시각에서는 사회적 ‘융화’, 즉 강제이주민들이 서독의 지역사회구조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강제이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강제이주 이전에 누렸던 법적 권리, 재산소유 및 사회적 지위를 ‘복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통합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가에 대한 분석은 독일의 정치사회가 영향력있는 이익집단들을 어떻게 조정, 통합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강제이주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중심으로 이들 집단의 형성과정을 조망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적 의도와 의의를 살펴본다. 다음에 집단과 시기에 따른 개별 사회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후, 정책입안과 시행에서 나타난 강제이주민들의 집단적 이해관계 관찰과정을 살펴보겠다.

Ⅱ. 강제이주민 집단이주의 배경과 수용과정

게르만민족이 수백년 동안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을 살펴보면 1910년 경에는 독일제국의 영토 이외에 발트해에서부터 불가강까지와 폴란드에서 이르기까지 동유럽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남부유럽지역에서는 특히 루마니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벤뷔르겐(Siebenbürgen), 바나트(Banat)지역과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Sudeten)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럽지역내에서 인구이동의 역사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민족국가 이념이 확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여왔다. ‘하나의 민족 – 하나의 국가’ 원칙에 따라 동질적인 언어와 민족의 공동체가 국가라는 경계를 갖게 되면서 다른 민속집단들을 국가경계 밖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확장된 지역에 자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주시키는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특히 폴란드, 러시아와 그 밖의 동부유럽, 동남부유럽 국가들과의 국경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집단적인 이주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Rautenberg, 1989: 20-21).

그 가운데 1939년에 히틀러가 천년왕국을 꿈꾸며 시행한 제3제국의 팽창적 인구정책인 폴란드지역의 게르만화정책은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 정책은 인종차별주의를 배경으로 이 지역의 폴란드인과 유대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이주시시키고, 대신 독일인들을 정착시켜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해오던 독일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지배를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정책이었다. 히틀러는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오래 전부터 거주해왔던 독일인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Benz, 1985b).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짓는 포츠담회담에서 패전국 독일의 국경을 확정하는 가운데 영국,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들은 폴란드뿐 아니라 동부유럽과 동남부유럽의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독일인

들을 강제이주시켜 독일의 군국주의적 영토팽창 야욕을 뿌리뽑으려는 결정에 합의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국경획정으로 폴란드와 소련영토가 된 독일제국의 동부지역에서 350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켜 독일의 소련군 점령지역에 200만 명, 영국군 점령지역에 150만 명을 수용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 거주하던 독일인 250만 명, 헝가리에서 50만 명, 오스트리아에서 15만 명을 역시 강제로 소련군 점령지역에 75만 명, 미군 점령지역에 225만 명, 프랑스군 점령지역에 15만 명을 각각 이주시기기로 하였다(Benz, 1985b).

1953년에 제정된 연방강제이주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에 따르면 강제이주민(Vertriebene)과 동독난민(Flüchtlinge)은 명백히 구분된다. 강제이주민은 독일 국적을 갖고 있거나 독일 민족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강제이주 당시 주거지가 외국의 행정적 관리를 받는 독일의 동부지역이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제국의 영토 외부에 있고,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결과 강제이주, 특히 철거나 피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또한 강제이주민은 독일 국적을 갖고 있거나 독일 민족으로서 당시 외국의 행정적 관리를 받는 독일의 동부지역, 단찌히, 에스트란트, 렛트란트, 리투아니아, 소련 연방,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와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강제이주방안에 따라 이 지역들로부터 떠나왔거나 떠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다시 1937년 1월 1일자로 거주지가 독일 제국의 동부지역이었던 실향강제이주민(Heimatvertriebene)과 1939년 1월 1일 당시 거주지가 위의 지역이었던 강제이주민(Vertriebene)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강제이주민증명서 'A'를 발급 받고 후자는 'B'를 발급 받았다.

그러므로 강제이주민 개념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강제적인 이주를 겪어야 했던 독일인뿐만 아니라 1944년 가을 이후의 소개작전(Evakuierung)이나 1945년 초까지의 일반적인 피난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거주지로 돌아갈 의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소련과 폴란드 관리들의 거부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연방강제이주민법은 독일국적 소지자나 독일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범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민족에 속하는 강제이주민과 피난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193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독일제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기본법에 따라 연방강제이주민법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193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독일제국의 영토규정은 1945년 6월 5일의 베를린선언에서 연합군에 의해 점령을 받게 된 지역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르면 중부와 동부유럽에서 강제이주된 사람들은 1,8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는 오스트프로이센에서 250만 명, 오스트폴마른에서 190만 명, 오스트부란덴부르크

에서 65만 명, 슬레지엔에서 460만 명, 체코지역에서 350만 명, 발칸반도와 메멜른더 지역에서 25만 명, 단찌히에서 38만 명, 구폴란드에서 140만 명, 헝가리에서 62만 3 천 명, 유고슬라비아에서 54만 명, 루마니아에서 79만 명과 러시아에서 온 200만 명으로 구성된다. 대개는 강제이주된 사람들을 1,400만 명으로 보는데 이는 강제이주 도중 목숨을 잃은 210만 명과 1950년 이후에 동독이나 서독으로 이주해 온 200만 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한편 오늘날까지 350만 명의 독일인들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소련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들 강제이주민은 서독에 1,190만 명, 동독에 370만 명, 오스트리아에 50만 명, 그 외의 다른 나라에 20만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idenfeld and Korte, 1992: 732-733). 이러한 강제이주과정은 1952년에 완결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이주민들을 공식적인 강제이주민으로 인정하는 시기는 종결되었다.

연방강제이주민법은 앞서 살펴본 강제이주민이라는 자격을 증명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전후 독일의 소련점령지역과 이후의 동독지역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난민들을 구분하여 이들에게는 동독난민증명서 'C'를 발급하였다(Heidemeyer, 1994: 23-69). 동독난민(Flüchtlinge)과 동서독이주민(Übersiedler)개념은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된 시기부터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독일 통일과 더불어 국경이 사라지자 그 정치적, 행정적 의미를 잃게 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법적인 독일인으로서 구동독으로부터 넘어온 사람들을 연방 급수용안(Bundesnotaufnahmeverfahren)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난민집단들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동서독이주민은 구동독에서 여행허가를 받고 서독으로 넘어와 구동독 시민권을 잃은 채 서독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구동독의 행정적 허가 없이 도피나 또는 다른 불법적 방법으로 구동독에서 이주한 동독난민이나 서독정부가 구동독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치범들은 제외된다. 종종 외국에서 돌아온 귀환민(Aussiedler)과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귀환민은 동유럽국가들에 퍼져있던 독일인 정착지역에서 자의로 이주해 온 독일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 온 강제이주민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귀환민에 속하지만 강제로 이주되었다는 점과 시기적으로 앞서서 이주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분된다(Koch, 1991: 1-10).¹⁾ 1989년 1월 1일부터 행정적 용어가 바뀌어서 구동독으로부터 넘어온 모든 이주민들을 동서독이주민으

1) 귀환민의 경우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한 관계로 언어사용이나 문화적 전통면에서 동독난민들과는 달리 통합의 어려움을 더 겪고 있고, 공산주의체제에서의 사회화로 인해 강제이주민집단과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의 사회통합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 통일과 더불어 더 이상 동서독이주민도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들을 다루었던 연방긴급수용안도 1990년 6월 30일로 폐지되었다(Weidenfeld and Korte, 1992: 674-675).

이상에서 난민집단이 다양한 내부구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집단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개별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도 그 목표하는 바나 과정이 다르리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다음에는 통합개념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들을 살펴보고 강제이주민집단의 통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III. ‘통합’ 개념에 대한 정의와 연구결과

라틴어의 ‘integer’는 ‘다치지 않은, 완전한, 또는 전체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학적으로 ‘통합(integration)’은 부분들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이 때 통일된 전체는 통합된 부분들의 합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한 통일체가 이미 있다면 통합은 새로운 부분을 기존의 부분들과 더 이상 서로 차이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이주민과 서독인들은 각자 부분으로서 함께 독일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거나, 또는 강제이주민집단만이 부분으로서 기존 서독인의 통일체에 수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연구된다. 전후 서독에서는 강제이주민들의 조직적인 융화와 서독인들과 강제이주민간의 완전한 동등권 확립이 성공적인 함께 살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다. 경제적인 통합을 이룸으로써 강제이주민이 스스로를 인내하는 원조수혜자, 즉 객체로 여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건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주체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통합의 결과로 생각된 것이다. 따라서 통합은 강제이주민이 서독인구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강제이주민에 대한 송인은 이들을 경제, 사회 및 문화의 영역 안에서 완전히 동일한 국민으로 융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가의 원조는 제한적이었다. 국가는 강제이주민 각자의 또는 집단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만 비로소 그들을 돋고자 했다. 이는 독일의 복지국가적 특성인 법치국가(Rechtsstaat), 사회국가(Sozialstaat)로서의 특성을 반영한다. 독일은 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또는 과거의, 국가에 의해 부과된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원조하지만, 이 과정은 우선 이들이 속한 지역공동체나 직업적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조합주의적 조정을 거친 후 결정되고 시행되었던 것이다(Ackermann, 1994: 12).

강제이주민집단에 대한 평가는 연방강제이주민전담부에서 1959년에 발간한 3권의

『서독의 강제이주민 — 그들의 통합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Lemberg and Edding, 1959)에 집대성되었는데 이 전집에서는 통합을 경제부분에서의 일방적인 물질적 이해로 한정하여 보았던 이전의 연구들을 비판하였고, 성공적이고 진정한 통합이 되기 위한 미래의 법률체계와 행정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전의 연구성과들은 서독에서의 이들 집단의 경제적인 통합을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오히려 강제이주를 다행스러운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들을 전후 독일의 경제재건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구집단으로 평가해 강제이주를 사후에 정당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필자들은 강제이주민의 통합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석을 통하여 강조하면서 강제이주된 고향에 대한 권리와 이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의식적으로 강제이주민들이 통합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에서나 경제적 상황에서 이주하기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점을 연구결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이들로 인해 서독의 국민경제가 부담을 지게 되었음을 보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전통적 연계로부터 벗어나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강제이주민을 특히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인구집단으로 전제하면서, 그러므로 이들의 통합을 혁명적인 과정으로까지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은 통합이 실패했을 경우, 강제이주민의 프롤레타리아화와 서독의 불세비키화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통합은 반공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질서개념을 갖고 50년대에 동독에서 진행된 강제이주민에 대한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경쟁적인 반테제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미국, 영국과 프랑스 3국의 점령당국은 강제이주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에게 동맹금지령을 내렸는데 1948년에 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미국식의 ‘용광로 사회’ 개념으로 강제이주민들을 동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서독사회는 강제이주민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였고 이는 연방강제이주민법 제96조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유럽사회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갖고 공존하고 있는 전통적 특성이 독일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혈통집단과 동향민집단의 공존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1890년부터 동부나 동남부유럽으로부터 넘어온 이민인구를 일방적으로 동화하려는 미국식의 ‘용광로 사회’나 ‘대중화 사회’의 전통(Anglo-Konformismus, melting pot, kultureller Pluralismus), 즉 다수가 소수를 자신 안에 융합해 버리는 관계가 아닌, 다양한 출신들이 부분으로서 균형을 이루어 전체를 구성하는 ‘문화적 연방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특성들이 함께 녹아버리는 ‘용광로 사회’의 모델은, 과거에 다양한 혈통과 동향을 중심으로 한 집단들에 의해 독일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

던 가치있는 통합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Schraut, 1994: 77-93; Ackermann, 1994: 15).

뵈(M.H. Boehm)은 동화(Assimilation)의 두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둘은 단절되고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용해된다는 의미에서의 동화로서 새로운 환경으로의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과격한 집합주의적인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편입한다는 의미에서의 동화로서 보수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하는 개념이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개별 인간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강제이주민의 '유기적 편입' 과정은 이들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되어 원자화될 가능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부정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대중화를 경계하는 개별 인간들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파일(E. Pfeil)은 통합(Eingliederung), 숙달(Einleben)과 동화(Assimilation)를 구분하고 있는데 통합은 직장을 얻는다거나 주거지를 정하고 기존 주민들의 교제생활에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객관적인 사회학적 개념이고, 숙달된다는 것, 즉 숙해진다는 것은 주관적이며,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을 일컫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동화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 스스로를 더 이상 아웃사이더로 인정하지 않게 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동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기간의 통합과정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이방 민족이 기존의 민족 안에서 혼적없이 소멸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적 특성들과 생동감 있게 대립하여 서로를 풍부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통합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뮐러(K.V. Müller)는 이 개념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전의 고향으로부터 이질화되어 가는 과정임을 경고한다. 그러므로 강제이주민의 성공적인 서독사회로의 통합이 그것의 중립적인 표현과는 달리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들, 특히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독일의 동부영토에 대한 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있다.

1959년에 오버랜더(T. Oberländer)가 통합의 3단계 모델을 발표하였다. 첫번째는 일자리와 주거지의 확보, 두번째는 자신이 유래한 사회의 상황을 확고히 정의하는 것, 세번째는 내적인 융화를 들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과제로 보았다. 한편 남(P.P. Nahm)은 역사적 과정을 4단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식량 확보와 임시거처에 수용, 둘째는 일자리와 주택마련, 셋째는 법적인 동등권, 직업적인 융화와 재산형성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독일 동부지역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자산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투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경제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을 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Ackermann, 1994: 16-18; Lüttinger, 1989: 34-41).

그러나 난민통합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각각의 개념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전망에서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주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 기준의 서독인들과 마찬가지로 참여하게 되면 통합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합을 피난과 강제이주의 결과로서 분석하였는데 이들이 사회문화적인 분화과정에서 기준의 주민들에 상응하는 발전을 보인다거나 동등한 기회구조를 갖는 한 통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 경제적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및 국가의 정책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에 두고 통합의 모델은 안정된 사회를 전제로 하며 또한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독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효과를 통합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집단의 통합정도를 평가하는 연구들의 문제점은 또한 갈등상황을 곧 비통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의 개념은 한 사회의 모든 공통적인 인간행위가 사회체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그 붕괴를 막도록 정향지워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행위자들 간이나 제도들 간의 질서 잡히고, 서로 일치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사회체계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통합은 상태와 과정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는 행위안정성과 역할정립을 이루어 개인적인 평등과 안락감을 느끼게 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개인과 사회체계가 균형과 긴장해소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강제이주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통합에 대한 행위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강제이주민은 그들의 선택여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주민들이 개인적 행위의 선택을 통하여 통합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강제이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개인적 행위선택의 융통성을 갖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주의 사회학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통합개념이 이미 선형적으로 다수가 소수를 통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과정으로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통합되는 사람들을 객체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연구에서는 통합을 상호성에 대한 사회과정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합은 서독사회에서 강제이주민이 장기간에 걸친 유기적인 성장과 그 경과 안에서 서독경제 역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편입, 정치적인 통합, 사회문화적인 동화는 기존의 주민들과 새로운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과정들이며,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체사회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독일사회에서 강제이주민집단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기존 주민들의 사회적 상황을 연구하기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해 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50년대 중반에 ‘평준화된 중간층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명제(Schelsky, 1965)는 기존의 주민들은 직업기회에 대한 구조적 변동과정에서 상당한 선택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반면, 강제이주민집단들에게는 그들과 동등한 기회구조가 열려있지 못했었다는 분석결과들에 의해 도전받기도 하였다. 강제이주민집단들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양상이 통합과정과 결과에서 차이를 놓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6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이들 집단의 통합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70년대의 강제이주민집단 연구는 강제이주민연합이 압력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동방정책에 의해 이들의 독특한 정체감이 상실되었다는 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망명자, 해외이주자 각 집단에 따라 통합의 정치적 의미는 다 다르다. 한편 귀환민집단들 중에서도 출신지역, 세대에 따라 통합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났다. 슬레지엔 출신 청소년 조사에서 보면, 이들은 같은 연령대의 서독청소년들과 다른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데 대부분 가부장제적으로 구조화된 가족과 농촌지역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종교적 연계가 강하고 종종 권위에 종속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서독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심한 정체감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소비형태나 갈등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상은 서독에서의 배제와 단절의 대가로 해석되었다(Hager and Wandel, 1978: 193-209). 한편 이러한 해석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갈등이 없고 소비지향적인 특성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적응(Anpassung)과 수용(Adaptation)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므로, 근접(Annäherung)이나 적응(Anpassung)을 거쳐 종국에는 동등(Angleichung)의 의미를 지닌 적응이 없이는 복구, 보완, 개혁, 회복 및 완성의 의미를 지닌 통합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Wypych, 1980: 136-147). 이들 청소년들이 보인 특성은 동등해지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을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강제이주민, 동독난민이나 해외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난민집단에게 찍힌 수동적인 객체라는 낙인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며, 기존의 주민들과 새로운 편입자들 모두를 주체로서 개념지으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주민들이나 난민들 모두에게 통합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준비가 요구되며 통합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균형 잡힌 것은 아닐지라도 상호간의 영향력과 변화와 상호작용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통합개념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함의에서 자유롭고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작가능한 ‘통합’의 통일된 개념규정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규정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서 볼 때, 강제이주민들이 서독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집단적 노력은 그 어느 난민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강력하게 진행된 상호작용과정이었다. 특히 강제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보인 이들의 조직적 대응은 통합과정에서의 갈등상황과 이를 내부의 집단적 역동성을 보여준다. 다음에는 먼저 강제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의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강제이주민에 대한 사회정책

강제이주민을 통합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전후 서독에서 전쟁과 관련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을 근거로 한다. 전쟁과 관련된 희생은 직접 전투에 관련된 개인적 희생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연방부양법이나 전후 동구권에 잔류하였던 억류자들에 대한 원조를 규정하고 있는 억류자부조법으로 보상되며, 연방부양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충적인 급여의 성격을 갖는 전쟁희생자부조가 있다. 한편 나치 불법으로 인한 물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연방피해보상법도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강제이주민의 경우는 전쟁으로 인한 물적 손상에 대한 부담을 조정하는 전쟁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sgesetz)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강제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은 전후 서독사회의 경제적 발전 및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안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을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그러한 참여를 통해 이들 집단이 자조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원조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사회정책의 핵심과제이며 방법이었다. 이에 가장 중요하게 진행된 정책으로 거주지이전 프로그램, 전쟁부담조정법과 이산가족찾기 정책을 들 수 있다.

1. 거주지이전 프로그램(Umsiedlungsprogramm)

전후 연합군정체에 의하여 강제이주된 독일인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점령당국은 수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관계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주요 수용지역이었던 3개 주(州), 즉 영국군 점령지역이었던 슬레스비히-홀슈타인과 니더작센 및 미군 점령지역인 바이에른은 수용할 주택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수많은 강제이주민들이 몰려오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이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금지된 상황이었으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따라서 계획적인 조정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충분한 주택건설과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적인 뒷받침이 중요하였다. 한편 해외로의 이주와 국내이주가 계획되고 진행되었다. 정치적인 상황과 이동수단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해외이민은 1947년 이후에야 점령군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락되었다. 그러나 1953년 말까지 해외로 이민간 강제이주민은 대략 110,000명 정도로 그로 인한 인구분산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

1947년 6월 7일 뮌헨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분산의 문제를 논의하였고 프랑스와 소련 점령지역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같은 해 7월 23일 받게베르크(Bad Segeberg) 회의에서 그 법적 절차와 기타 조건들을 난민문제 주무장관 주최로 결정하였다. 초기에는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별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후 일자리 중심 분배로 전략을 바꾸어 60만 명의 이동 성과를 올렸다(Bundesminister des Innern, 1982: 76-78).

정부수립과 더불어 기본법 제119조에 강제이주민과 기존의 주민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각 주에의 분배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을 제시하였고 따라서 1951년 5월 이에 대한 종합적 법령과 3개의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는 1950년의 주택건설법과 부담조정 조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법은 거주지이전을 한편으로는 공동체원조나 주택 확보원조 등과 같은 공적인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대부를 통하여 권장하였다. 법적으로 주택이 확보되어야만 이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들을 수용할 주에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갚게 하였다. 또 1953년 조정기금에서 이주주택 건설을 위해 2조 마르크를 지원했고, 1953년 연방강제이주민법이 발효되면서부터 이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949년 11월에 1차적으로 시행했던 이주계획은 바이에른, 니더작센과 술레스비히-홀슈타인에 수용했던 강제이주민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인구비례와 주택사정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후의 주거이전 프로그램에는 강제이주민들의 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구조를 반영하여 인구분산과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이후에 연금수급자나 공적 부조대상자들의 분산 이주가 진행되었고, 이미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의 가족들 중 난민수용소와 긴급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던 구성원들의 이주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1956년 6월에는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조직된 인구평준화(49-63년)로 1,050,000명의 강제이주민이 이동하였다. 각 주별로 보면 바이에른에서 268,000명, 니더작센에서 338,000명과 술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444,000명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529,000명, 바덴-뷔르템베르크에 284,000명, 라인란트-팔츠에 126,000명, 함부르크에 64,000명, 혜센과 브레멘에 47,000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위해 19억 마르크의 연방지원으로 265,000채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한편 이들의 수송을 위하여 2억 마르크가 지원되어

거주지이전프로그램을 위한 정부지원은 약 21억 마르크가 된다(Reichling, 1989: 34-40).

또한 주의 경계 안에서의 주거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1949년에 이미 독일 지방의회에서 공간조직적 개념에 의하여 각 주마다 난민산업체를 설립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경계 안에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바이에른에서는 가족을 포함하여 2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지역내 이동을 하였고, 헤센에서는 1,000여 개의 난민산업체가 설립되어 87,000명이 이동하였다. 전체적으로 1949년에서 1960년 사이에 670만 명의 강제이주민들이 자신이 정착한 주내에서 주거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Bundesminister des Innern, 1982: 79-84).

한편 강제이주민의 자유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1949년에서 1960년 사이에 약 10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정부계획에 의하여 주경계를 넘어 이동한 반면, 약 240만 명은 개별적인 자유이동을 하였다.

2. 전쟁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sgesetz)

50년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강제이주민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문제의 심각성도 많이 완화되었다. 이 과정은 1948년의 화폐개혁과 경제구조조정 및 마샬플랜과 같은 조정정책적인 개혁으로부터 서독경제의 성공적인 재건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적 단계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경제사 연구에서는 패전 후 서독경제가 빠른 기간 안에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독의 조정정책적 조치들이 시행되기 이전인 50년대 초 한국전쟁을 계기로 활발해진 세계경제 안에서 찾고 있다. 냉전으로 인한 서방국가들의 응집력이 서독의 경제적 발전과 이를 위한 정치 및 사회체제의 정비를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강제이주민을 통합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독의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의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장소의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서독경제의 재건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Lüttlinger, 1989: 87-91).

전쟁과 그 결과로 인한 후유증의 경험은 개별 집단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움의 수준도 다르다. 그러므로 그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자는 논의는 전후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3년에서 1928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은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약 100조 마르크 (Reichsmark)에 달하는 전쟁피해보상을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부담조정은 그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과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발전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접근방법을 요구하였다.

그 방법에 대한 독일측의 공식적인 제안들은 화폐개혁과 부담조정안을 연결하여 시행함으로써 더 폭넓은 재산분배를 꾀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군 점령지역에서 전후 독일의 최초의 유사의회적 위원회의 특성을 갖고 거의 모든 정치적 주장을 대표하는 군정고문단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능력의 손실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소득과 소유의 분배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개개인의 손실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군 점령지역에서도 화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근거로 포괄적인 사회개혁을 계획했으나 시기적으로 서독정부가 책임을 지고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Abelshauser, 1987: 230-234).

1949년 8월에 영국군과 미군 점령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1년 후에 프랑스군 점령지역에서도 시행된, 사회적 긴급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인 ‘긴급부조법(Soforthilfegesetz)’이 발효되었다. 이 법이 1952년 8월 14일에 최종적으로 ‘전쟁부담조정법(Lastenausgleichsgesetz)’으로 완성된다. 긴급부조법은 난민,²⁾ 전쟁피해자, 화폐개혁의 피해자와 전쟁의 책임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택건설을 원조하였다. 이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부조금은 이제까지 공적부조 대상자들을 위한 부조금과 같은 수준이었고 이들도 법적인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이로 인해 낙인이 찍히는 것으로부터는 자유스러울 수 있었다. 재정적 뒷받침은 연방정부의 특별예산으로 마련되었는데 우선 재산세의 2-3%에 해당하는 긴급부조세를 통해 1952년 8월까지 60만 마르크가 넘었고, 또 화폐개혁과정에서 토지채무를 1:10의 비율로 평가절하하여 얻은 이득을 거두어내는 부동산세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탁월한 사회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으나 전쟁의 부담을 배분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와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후 확증법(Feststellungsgesetz)이 마련되어 전쟁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독일제국의 동부지역에서 피난하였거나 강제이주된 1,400만 명 중 1950년까지 790만 명(1961년까지는 890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왔는데 그 중 300만 명 이상이 폭격이나 다른 전투행위에 의하여, 또는 피난하는 도중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서독국민의 3분의 1이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지역으로부터의 강제

2) 이 시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강제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강제이주민(Vertriebene), 소련군점령지역으로 강제이주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서독지역인 영국군, 미국군, 프랑스군 점령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소련군 점령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현재의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모두 난민(Flüchtlinge)으로 칭하였다.

이주에 의해 잃게 된 사적인 재산피해만 보아도 620조 마르크(Reichsmark)에 달했고, 폭격에 의한 재산피해는 270조 마르크(Reichsmark)에 달하였다. 화폐개혁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1,000조 마르크(Reichsmark) 수준이었다(Bundesminister des Innern, 1982: 30-74).

이 과정에서 강제이주민들은 직업집단적인 압력단체를 결성하여 정부와의 협상 결과 수차례 걸친 수정 끝에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이전의 재산소유에 비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전쟁부담조정법을 완성시켰다. 특히 이전의 기업가나 자영업자, 농민 등 구중간계급적 집단별로 구성된 이익집단들은 군정 시기부터 영국군이나 미군 점령 당국이 제시한 제안들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원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고 강력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강제이주민들은 강력하게 결속하여 단일의 이익집단으로서 각 정당과 행정당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Park, 1989: 16-21).

서독정부의 입장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사회적 공정성의 실현보다는 경제재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기본전제를 확고히 하고 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업가들을 위해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Abelshauser, 1987: 232).³⁾ 그러므로 부담조정법은 저당권이득세, 신용이득세와 함께 화폐개혁 이후를 기준으로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담금에 대한 세금조정을 내용으로 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친 분산조정등의 방법으로 이들 납부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전쟁부담조정법은 독일 역사에 남을 효과를 발휘하였다. 조성된 기금에서 수십만 마르크가 직접적인 피해보상, 전쟁피해연금, 화폐개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지불되었고 주택건설이나 교육원조를 위한 대부에 쓰여졌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에도 지원하여 1956년까지 2억 8,600만 마르크를 투입, 58,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48,000명의 강제이주민과 동독난민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부담조정법의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강제이주민집단이었다. 1950년 인구조사에서 서독인구 4,770만 명 중 16.5%에 해당하는 790만 명이 강제이주민이었고 약 150만 명이 소련군 점령지역에서 넘어온 난민이었다. 이들 중 3분의 1은 실업자였고, 4명 중 1명 꼴로 주거지가 없었다(Abelshauser, 1987: 233-234). 따라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들은 이들 집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독사회의 안정과

3) 당시 서독 수상은 어떠한 사회정책을 시행하거나 강제이주민을 통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근거는 경제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경제부흥만이 장기간에 걸친 전쟁부담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3. 이산가족 문제와 후기귀환민(Spätaussiedler)문제

점령군에 의한 일반적인 강제이주정책은 1947년에 종결된다. 이후 영국과 미국 점령당국에 의하여 소련군 점령지역과의 분계선이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이 경계선을 넘는 이동은 불법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곧 이산가족의 이동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계는 완화되었다. 먼저 이산가족 찾기와 상봉은 1946년부터 적십자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독일적십자는 독일제국의 동부지역과 폴란드, 소련점령지역 및 독일의 점령 하에 있었던 동유럽국가들에서 독일국적을 갖고 있거나 독일민족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이산가족 및 실종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연락하여 약 650만 명의 생사여부 확인과 연락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를 근거로 1949년 6월에 폴란드와 이산가족의 이주허가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들은 점령군에 의해 강제이주된 독일인들과는 구분하여 1953년 연방강제이주민법에서 귀환민(Aussiedler)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폴란드,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및 중국 등지로부터 이주해 온 이들 귀환민들은 1950년에서 198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국경조정문제로 가장 많은 이주민을 결과한 폴란드로부터의 799,325명을 포함하여 1,289,987명에 이르렀다.

서독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강제이주민등의 난민집단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노출되자 그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행정부처인 ‘연방강제이주민, 동독난민, 전쟁피해자 전담부(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가 발족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처는 강제이주민집단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다는 내외의 평가에 의해 해체되고 이들의 문제는 1969년부터는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에서 담당하게 된다. 1976년에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자유로워진 여행허가협정에 의하여 귀환민의 수는 급증하였고, 따라서 1976년 5월에 귀환민과 이주독일인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70년대에는 독일인들의 귀환이나 동독난민 문제보다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난민들이 대다수 망명을 신청해오고 이들의 수용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외국인 망명객 문제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1979년에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국인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안(Programm für ausländische Flüchtlinge)들이 마련되었다(Hoffmann, 1989: 90-97).

이상에서 살펴 본 강제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정책을 통하여 이들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은 전후 내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강제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찰시키기 위한 압력집단을 결성하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V. 강제이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압력집단 형성

1. 압력집단의 형성과정

강제이주민들의 자체적인 조직형성은 전후 가족을 중심으로 한 동향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산가족 찾기를 목표로 한 자체적인 도움망으로 발전하면서 서독의 각 수용지역들로 확대되어 나갔다. 그 조직은 우선 다양한 출신지역의 강제이주민들을 각 수용지역별로 묶어 그 지역의 행정적인 수용체계와 점령당국의 조치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웅집력을 높였으며, 이후 수용지역을 넘어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묶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다. 1945년 8월에 이미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에 주데텐지역과 슐레지엔, 동남부유럽국가로부터 강제이주된 사람들을 위한 구원조직이 성립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강제이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근거에 대한 요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즉각적인 구원체계를 형성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1945년과 46년에 강제이주민들의 조직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행정체계로부터 권한을 가진 적합한 대표조직으로 인정받아 움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4, 5월에 미국과 영국 점령당국은 이들의 연합체 결성을 금지시켰다. 이는 1947년과 48년에 완화되면서 결국 해제되었다. 카터(L. Kather)는 이를 회상하며, 강제이주민들의 사회운동과 정책은 오히려 동맹금지령을 통해 이들을 더욱 확고하게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동맹금지기간에도 집단형성은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점령당국에 의해서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강제이주민들의 정치조직 형성은 강력하게 저지되었고 문화적이고 복지적인 조직만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냉전시대로 들어가면서 동맹금지령은 마침내 해제되었고 초기의 동맹결성의 기초가 뒷받침되어 강제이주민들의 이익집단 조직은 활발해졌다. 각 주와 각 점령지역의 조직체 결성을 거쳐 마침내 고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화된 전국적인 동향민조직이 탄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집단적 특성이 강하고 직업집단별로 결성된 조직체들이 전국조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강제이주민들의 이중적 조직체계는 이후 이들을 하나로 묶어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 나아가 사회적인 면에서 압력집단으로 기능하게 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 각 조직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경쟁적인 관계가 전체 강제이주민집단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나로 묶지 못했

던 것이다.

이들의 통일적 전국조직은 1949년 4월 9일에 ‘강제이주 독일인 중앙연합회’(Zentralverband der vertriebenen Deutschen: ZvD)로 각 주별로 결성된 이익집단들을 하나로 묶은 조직체였다. 이 조직과 더불어 형성된 ‘동부독일인 동향인연맹(Vereinigten Ostdeutschen Landsmannschaften: VOL)’은 출신지역별 하부조직들을 대표하였다.⁴⁾

이들 조직들은 1949년 11월 20일에 괴팅겐회의에서 각 조직의 업무분담을 논의하고 1950년에 ‘고향의 날’ 행사를 계획하였다. 또한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모은 ‘독일 강제이주민 헌장(Charta der deutschen Heimatvertriebenen)’을 채택, 발표하였다. 1951년 11월 18일 독립되어 있던 두 조직이 ‘강제이주 독일인 동맹(Bund der vertriebenen Deutschen: BvD)’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몇몇 동향인조직들이 새로이 출신지역별로 구성된 조직을 하나로 묶는 ‘동향인 연합(Vertriebene der Landsmannschaften: VdL)’을 다시 형성함으로써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다가 결국 1957년 10월 27일에 ‘강제이주민 동맹(Bund der Vertriebenen: BdV — Vereinigte Landsmannschaften und Landesverbände)’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에는 강제이주민들이 50년대 팔목할 만한 서독의 경제성장을 뒷받침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미 서독사회에 상당부분 통합되었다는 사실이 작용하였다. 이 조직은 당시 20개의 연방동향인 집단과 11개의 주별 조직을 통합하고 BdV에 속해 있었던 직업집단별 조직들을 총괄하였다. 직업집단별 조직에는 경제인들을 대표하는 Verband der heimatvertriebenen Wirtschaft(VhW), 농민들의 조직인 Bauernverband der Vertriebenen(Lotzien, 1995: 171-178),⁵⁾ 청소년조직인 DJO — Deutsche Jugend des Ostens,⁶⁾ 대학생조직인 Verband Heimatvertriebener Deutscher Studenten(VHDS)⁷⁾가 있고 여성을 대표하는 조

4)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출신지역별 동향인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Deutsch-Baltische Landsmannschaft, Landsmannschaft Berlin-Mark Brandenburg, Landsmannschaft der Deutschen aus Jugoslawien, Landsmannschaft Ostpreu en, Pommersche Landsmannschaft, Landsmannschaft Schlesien- Nieder- und Oberschlesien, Sudetendeutsche Landsmannschaft, Landsmannschaft Weichsel-Warthe, Landsmannschaft Westpreußen.

5) 연방강제이주민법에서는 강제이주나 피난 전에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다시 농업부문에 투입하는 지원책을 보장하여 1949년 7월부터 1992년 말까지 229,035농가가 828,102 ha를 경작하게 되었다. 경작면적에 따른 분류를 보면 0.5 ha 미만의 경작농가가 140,506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30 ha 이상 경작 농가는 5,228가구이다.

6) 1974년부터 DJO — Deutsche Jugend in Europa으로 개칭하였다.

7) 1964년에 Ostpolitischer Deutscher Studentenverband(ODS)로 개칭하였고, 1984년부터는

직인 Frauenarbeit im BdV⁸⁾도 그에 속한다. 이 조직은 2백만 명이 넘는 구성원들을 갖고 활동했으며 경제적인 통합 이후에는 문화정책적인 면에서 강제이주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동남부유럽 국가들로부터 독일국적 혹은 민족적 연계를 갖는 귀환민들의 이주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이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문제에서 이 조직들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Reichert, 1989: 166-169).

강제이주된 지역에서 오래 기간에 걸쳐 축적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보존과 발달도 강제이주민 이익집단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동부독일인 동향인 연맹은 강제이주민들을 문화적 영역에서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갔는데 박물관 설립이나 관련문서 보관 및 정보센터 운영,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문화중앙자문단 운영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정적인 뒤받침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협조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Bundesminister des Innern, 1982: 136-163; Ratza, 1989: 216-227).

2. 강제이주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강제이주민들의 압력단체 형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부분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총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조직의 이중적 체계가 오래도록 통일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립적인 양상까지도 보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강제이주민집단의 내부적인 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들의 압력집단화 과정과 성과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이념으로 계급이해갈등을 조합주의적 통제에 의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후 경제를 복구하려는 의지는 강제이주민들이 중간계급적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이전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복구하려는 노력과 맞물린다. 이 때 전쟁부담조정법에 대한 논의와 실행과정에서 강제이주민들 중 구중간계급을 중심으로 이주 이전의 재산관계를 복구하고자 하는 요구와 이들의 경제적 수행능력을 전후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발전에 투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협상을 이루어 낸다. 그런데 이 협상은 냉전상황을 계기로 확대된 서독의 이데올로기적 보수화경향이 강제이주민집단을 아데나워정권을 뒷받침하는 반공주

Gesamtdeutscher Studentenverband(GDS)로 불린다.

8) 1969년부터 Frauenbund für Heimat und Recht로 단체명을 바꾸었다.

의의 극우보수집단으로 정비하여 내부적 통합과 서유럽의 대소련 방위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Imhof, 1975). 한편 이러한 반공주의는 전후 생산과 분배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나 반독점화 요구와 같은 시장경제적 발전에 대한 걸림돌들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서독의 급속한 경제재건을 뒷받침하였고, 이는 서독의 계급구조화와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의 자본주의적 발전단계와 전쟁 및 전쟁의 결과에 의해 규정되는 계급상황은 장기간에 걸친 산업부문의 변화, 특히 전통부문이 근대적인 산업부문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수직적인 사회이동을 통해 구조화된다. 전후의 물질적 궁핍과 상대적 박탈감은 각 계급의 이익집단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국가는 이를 이익집단화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계급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뚜렷한 사회적 하강이동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구중간계급은 사회이동율이나 이동의 방향, 이익집단조직 및 계급이해 관철에서 당시 서독의 계급구조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Handl and Herrmann, 1993: 125-140). 이 계급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급격하게 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응집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강제이주민들의 경우, 아주 이전의 계급상황을 복구하려는 이해관계가 특히 구중간 계급의 이익집단화를 통해 급진적으로 표출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이념하에 경쟁경제정책을 채택했던 서독 기민당 정부의 경제노선과의 연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관철된다. 이에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손실을 이들 강제이주민들이 배꾸어 나갔으며, 농촌에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적이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농민 출신의 강제이주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 전후 일상용품 부족현상으로 일용소비재를 공급할 수 있는 전통부문이 상당부분 확대되었으므로 강제이주민들 중 독립자영업자층들이 이 부문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투입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중요하다(Park, 1989: 174-207).

강제이주민집단의 개별적인 직업집단조직들은 정부와의 전쟁부담조정법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강력하게 대변하기 위해 결속하였으며, 이로써 각 정당과 행정당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나갔고, 50년대 중반에는 독자적인 정당을 구성하기까지에 이른다(Steinert, 1990: 61-80).⁹⁾ 주목할 점은 이들 직업집단들은 아주

9) 강제이주민들은 압력단체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실향강제이주민과 박탈자동맹(Block der Heimatvertriebenen und Entrechteten: BHE)’을 정당으로 결성하였다. BHE는 50년대 초에 가장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여 강제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대표적인 강제이주민서인 Schleswig-Holstein의 주의회 선거에서 23.4%의 득표를 하기도 하였으나 연방의회

이전의 기업가, 상공업 자영업자 및 자영농민과 공무원 등의 중간계급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하였고, 노동자계급은 독자적인 이익집단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제이주민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의 성격은 정부와의 피해보상 협상에서 강제이주민 전체가 아닌 이들 중간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계급적 응집력은 '평준화된 중간층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드러내게 한 50년대 서독 사회의 계급구조화에 중요한 일부분을 이룬다. 이는 분단국가인 서독이 냉전시기에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대내적인 정치적 안정과 독일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었고 강제이주민들의 압력집단은 그를 위한 충실한 동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제이주민들이 압력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이해관계는 우선 구중간계급을 주축으로 과거의 계급적 상황을 복구하는 것이었고, 냉전상황이 전개되면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향민으로서의 요구를 결집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관철과정과 그 결과들은 이들 난민집단이 서독사회에 통합되는가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강제이주민들의 결집된 힘을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조절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고, 이로써 이들 집단의 사회적 통합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VII. 결 론

강제이주민들은 한편으로는 1950년대 서독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가능하게 하여 짧은 시일 안에 서독의 경제, 거주구조와 문화양상을 변화시킨 집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제공한 값싼 노동력으로 인하여 서독 농업의 합리화가 지체되었고, 이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지원이 오랜 기간 동안 서독 사회에 막대한 사회적,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독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장애가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한편 강제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우선 빈번하게 이루어진 집단 전체나 개별적인 지역이동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은 초기에는 주택문제로, 그 다음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들은 강제이주로 인해 이주 이전의 재산의 대부분

선거에서는 1953년 5.9%를 기록했고 1957년 선거에서는 4.6%의 득표율 밖에 얻지 못하여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을 상실한 집단으로 규정된다. 이 두 요인으로 인해 강제이주민들은 새로 정착한 서독 사회에서 집단적인 사회적 하강이동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쟁으로 인한 인구손실로 취약해진 노동시장에 돌입한 거대한 노동잠재력이었다. 전체사회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통합은 경제복구과정에서 서독지역민 노동자들보다 낮은 지위로 노동현장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제이주민집단의 사회적 통합이 전후 혼란한 서독 사회의 취약한 경제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동독난민의 경우는 이들이 서독정부 수립 이전에 왔는가 이후에 왔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독사회가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오르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에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이 서독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은 강제이주민집단에 비해 집단적 특성보다는 개별적인 차별성에 따라 진행되었다.

압력집단의 형성에 있어서도 동독난민들은 강제이주민집단에 비하여 형성의지가 약하였고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영향력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강제이주민의 압력집단화는 일찍부터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강제이주된 중간계급 출신들은 이익집단의 활동을 통해 이전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강제이주민으로서, 중간계급에 소속된 직업집단으로서 서독사회에서 기존의 직업집단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익집단과의 갈등, 협조과정을 거쳐 그 안에 흡수되었다. 이후 서독 자본주의의 구조적 재편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계급구조화, 즉 구중간계급의 급속한 해체 및 사무노동자화의 확대경향은 강제이주민들에게도 역시 적용되면서 60년대부터 이들은 배타적인 이익집단으로서의 속성을 상실했다.

폐전에 따른 사회적 혼란기에 시행된 강제이주민에 대한 통합정책은 이후 다양한 난민집단을 다루는 정책들과 함께 독일 사회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 날 동서독이 통일된 역사적 시기에 구동독지역민들이나 귀환민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이주민집단이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전후의 경제재건과 동독체제와의 대치상황에서 정치적 안정 추구라는 명백한 국가적 과제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강력히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 독일에서 구동독지역민이나 귀환민들, 나아가 독일민족이 아닌 여타 난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물질적인 뒷받침을 유도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동원되어야 한다. 독일이 신보수주의의 물결 안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경계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독일의 민주주의적 수준에 달려있다.

〈참 고 문 헌〉

Abelshauser, Werner

- 1987 "Der Lastenausgleich und die Eingliederung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Eine Skizze," Rainer Schulze u.a. (Hrsg.)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in der westdeutschen Nachkriegsgeschichte*. Hildesheim: Verlag August Lax. 230-234.

Ackermann, Volker

- 1994 "Integration: Begriff, Leitbilder, Probleme," Mathias Beer (Hrsg.) *Zur Integration der Flüchtlinge und Vertriebenen im deutschen Südwesten nach 1945*. Sigmaringen: Thorbecke.

Benz, Wolfgang

- 1985a "Vierzig Jahre nach der Vertreibung," Wolfgang Benz (Hrsg.)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7-14.

- 1985b "Der Generalplan Ost. Zur Germanisierungspolitik des NS-Regimes in den besetzten Ostgebieten 1939-1945," Wolfgang Benz (Hrsg.) *Die Vertreibung der Deutschen aus dem Ost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39-48.

Bundesminister des Innern (Hrsg.)

- 1982 *Die Eingliederung der Vertriebenen,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Hager, Bodo and Fritz Wandel

- 1978 "Probleme der sozio-kulturellen Integration von Spätaussiedlern. Mit besonderem Bezug auf Jugendliche aus Oberschlesien," *Osteuropa* 28: 193-209.

Handl, Johann and Christa Herrmann

- 1993 "Sozialstruktureller Wandel und Flüchtlingsintegration. Empirische Befunde zur beruflichen Integration der weiblichen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des Zweiten Weltkrieges in Bayer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2: 125-140.

Heidemeyer, Helge

- 1994 *Flucht und Zuwanderung aus der SBZ/DDR 1945/1949-1961: Die*

Flüchtlings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zum Bau der Berliner Mauer. Düsseldorf: Droste Verlag.

Hoffmann, Wilhelm

1989 "Was uns bewegt hat, was wir gestaltet haben — Erfahrungen eines Mannes der ersten Stunde," Marion Frantzioch u.a. (Hrsg.) *40 Jahre Arbeit für Deutschland — die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Frankfurt am Main: Ullstein Verlag. 146-152.

Imhof, Michael

1975 "Die Vertriebenenverbänd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Geschichte, Organisation und gesellschaftliche Bedeutung" Diss. Universität Marburg.

Koch, Friedhelm

1991 *Deutsche Aussiedler aus Rumänien*. Köln: Böhlau Verlag.

Lemberg, Eugen and Friedrich Edding (Hrsg.)

1959 *Die Vertriebenen in Westdeutschland. Ihre Eingliederung und ihr Einfluß auf Gesellschaft, Wirtschaft, Politik und Geistesleben*. 3 Bände. Kiel: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Lotzien, Hans

1995 "Ergebnisse der Eingliederung: Einsatz öffentlicher Mittel," Bauernverband der Vertriebenen e.V. (Hrsg.) *Die Vertreibung der ostdeutschen Bauern und ihre Eingliederung*. Göttingen: Agrarsozialen Gesellschaft e.V. 171-178.

Lüttinger, Paul

1989 *Integration der Vertriebenen: eine empirische Analyse*. Frankfurt/Main: Campus Verlag.

Meck, Sabine Meck, Hannelore Belitz-Demiriz and Peter Brenske

1992 "Soziodemographische Struktur und Einstellungen von DDR-Flüchtlingen/Übersiedlern — Eine empirische Analyse der innerdeutschen Migration im Zeitraum Oktober 1989 bis März 1990," Dieter Voigt and Lothar Mertens (Hrsg.) *Minderheiten in und Übersiedler aus der DDR*. Berlin: Duncker und Humblot.

Park, Myung-Sun

1989 "Die Vertriebe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Mobilität und Klassenstrukturierung in den fünfziger Jahren" Diss. Universität Bielefeld.

Ratza, Odo

1989 "Ostdeutsche Kulturarbeit-Verbände, Kulturwerke und Stiftung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Marion Franzioch u.a. (Hrsg.) *40 Jahre Arbeit für Deutschland - die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Frankfurt am Main: Ullstein Verlag. 216-227.

Rautenberg, Hans-Werner

1989 "Ursachen und Hintergründe der Vertreibung Deutscher," Marion Franzioch u.a. (Hrsg.) *40 Jahre Arbeit für Deutschland — die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Frankfurt am Main: Ullstein Verlag. 20-29.

Reichert, Günter

1989 "Das Organisationswesen der deutschen Heimatvertriebenen," Marion Frantzioc, u.a. (Hrsg.) *40 Jahre Arbeit für Deutschland — die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Frankfurt am Main: Ullstein Verlag. 166-169.

Reichling, Gerhard

1989 *Die deutschen Vertriebenen in Zahlen*. Bonn: Kulturstiftung der deutschen Vertriebenen.

Schaefer, Karl Heinz

1987 "Die Flüchtlinge und Übersiedler aus der DDR und Osteuropa sowie Ostmitteleuropa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WR-Bulletin* 25(34)(2-3): 86-96.

Schaefer, Karl Heinz

1990 "Die deutsche Wieder- vereinigung und das Vertriebenenproblem 1789 und 1989 — Symboljahre der Geschichte," *AWR-Bulletin* 28(37)(4): 182-198.

Schelsky, Helmut

1965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Düsseldorf.

Schraut, Sylvia

1994 "Zwischen Assimilationsdiktat und Fürsorgeverpflichtung," Mathias Beer (Hrsg.) *Zur Integration der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im deutschen Südwesten nach 1945*. Sigmaringen: Theobocke Verlag.

Steinert, Johannes-Dieter

1990 "Organisierte Flüchtlingsinteressen und parlamentarischer Demokratie: Westdeutschland 1945-1949," Klaus J. Bade (Hrsg.) *Neue Heimat im Westen: Vertriebene, Flüchtlinge, Aussiedler*. Münster: Westfälischer Heimatbund. 61-80.

Walla, Wolfgang

1994 "Ost-West-Wanderung seit dem Zweiten Weltkrieg," Mathias Beer (Hrsg.) *Zur Integration der Flüchtlinge und Vertriebene im deutschen Südwesten nach 1945*. Sigmaringen: Theobecke Verlag.

Weidenfeld, Werner and Karl-Rudolf Korte (Hrsg.)

1992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Wypych, Konrad

1980 "Adaptation und Integration jugendlicher Spätaussiedler. Ein Vergleich einiger wissenschaftlicher Ergebnisse," *Osteuropa* 30: 136-147.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Enforced Emigrants in West Germany

Myung-Sun Park

In the process of ending the World War II, the occupying na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executed the policies that enforced 18 million German camp residents in the eastern region of the Third Reich,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to move into the Allies-occupied territory, in order to decide the German border. In case of West Germany, it implemented various social policies that constituted later a crucial part of German social policies,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s of the integration of the large population of these enforced emigrants, along with other policies that dealt with various refugee groups, during the period of social disorder caused by defeat in war. As a part of labor security policies, residence moving programs, war expence adjustment laws, campaign for reunion of dispersed family members, late returnees policies, and other programs and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order to actualize the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enforced emigrants, and, at the same time, re-build German economy after the war.

Meanwhile, from the enforced emigrants' standpoint, they established the pressure groups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interests in earlier period. In particular,

enforced emigrants from the middle classes strongly endeavored to regain their past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through various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Integration', after all, has served for the government's intension of 'reconciliation', i.e., enforced emigrants' adaptation to the social structure in West Germany, while it has also helped the enforced emigrants in the process of th 'restoration' of their legal rights, personal property rights, and social status which they had enjoyed before. By constructing the market economy system, West Germany could manage to reconcile these different interests through the corporatism.

박명선,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el.: 0652-220-2529(O), 02-754-4933(H)